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태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399

발의연월일: 2022. 9. 19.

발 의 자:이태규・金炳旭・김선교

김예지 • 배준영 • 서병수

이명수 · 정경희 · 조경태

최연숙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의 교육전문직원과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간에는 교육공무원 종류 및 교류인원 등을 달리하여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올해 7월 시행된 「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,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전문직원도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, 교육감소속 교육전문직원과 상호 간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또한, 교육공무원의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를 위하여 중앙고충심사 위원회와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를 위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국가교육위원회,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, 교육감 소속의 교육 전문직원 간에는 서로 전직하거나 전보할 수 있도록 하고, 고충심사위 원회의 심의 대상에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을 포함하려는 것임(안 제20조·제49조 및 제60조).
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전문직원과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의 교육전문직원 간에는 서로 전직하거나 전보할 수 있다.

제49조제4항제2호 중 "부교수 이상의 대학교원과 제29조제1항 및 제2 9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교장·원 장의"를 "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"로 하고,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.

- 가. 부교수 이상의 대학교원
- 나. 제29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장학관·교육연구관
- 다.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교장·원장
- 라. 「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장학관·교육연구관
- 4. 「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4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임용하는 교육공무원의 고충

제6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전문직원과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간에는 서로 전직하거나 전보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(인사교류) (생 략)	제20조(인사교류) ① (현행 제목
	외의 부분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전문
	직원과 교육부 및 그 소속 기
	관의 교육전문직원 간에는 서
	로 전직하거나 전보할 수 있다.
제49조(고충처리) ① ~ ③ (생	제49조(고충처리) ① ~ ③ (현행
략)	과 같음)
④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	4
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	
심사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부교수 이상의 대학교원과	2. <u>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</u>
제29조제1항 및 제29조의2제1	<u>의</u>
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	
<u>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교장·</u>	
<u>원장의</u> 고충	
<u><신 설></u>	<u>가. 부교수 이상의 대학교원</u>
<u><신 설></u>	<u>나. 제29조제1항에 따라 대통</u>
	<u>령이 임용하는 장학관·교</u>
	<u>육연구관</u>
<u><신 설></u>	다.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
	대통령이 임용하는 교장·
	<u>원장</u>

<신 설>

- 3. (생략)
- ⑤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 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.
- 1. ~ 3. (생략) <신 설>

⑥ ~ ⑧ (생 략) 제60조(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 제60조(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 · ② (생 략) <신 설>

라. 「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 20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 이 임용하는 장학관·교육 연구관

- 3. (현행과 같음)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4. 「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 4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임용하는 교육공무 원의 고충
- ⑥ ~ ⑧ (현행과 같음)
- 원의 특별채용 및 전직 등) ① 원의 특별채용 및 전직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 - ③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전문 직원과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 문직원 간에는 서로 전직하거 나 전보할 수 있다.